

남원시 공고 제2023 - 12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명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12. ~ 2023. 6. 27.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3.6.12.)	김○윤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375, 376, 377-1, 378-1	부1 블록 창고 7.04㎡ 부2 목조 창고 11.44㎡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2.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남원시 공고 제2023 - 12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12. ~ 2023. 6. 27.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3.6.12.)	김○용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240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240-1	주1 블록 주택 38.74㎡ 부1 목조 창고 10.78㎡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2.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남원시 공고 제2023 - 1281호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민 안전 및 교통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 · 시간 신설 (안 제6조제4항)
-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 → 평일 08:00~20:00

3. 입법예고기간 : 2023. 06. 14. ~ 2023. 07. 04.

4. 의견제출

- 가.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insa77@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붙임

남원시 예규 제 호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적용”을 “어린이보호 구역,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은 평일 08:00~20:00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단속시간) ① ~ ③ (생 략)</p> <p>④ 주민신고제(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단속 시간: 24시간 (<u>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적용</u>)</p> <p>2. 가 ~ 마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3. (생 략)</p>	<p>제6조(단속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1. -----(<u>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은 평일 08:00~20:00 적용</u>)</p> <p>2. 가 ~ 마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p> <p>3. (현행과 같음)</p>

붙임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붙임 행정안전부 지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

① 구역 확대(5대 지점 → 5대지점 + 인도구역)

- (현행) 인도 구역 운영 지자체 203개(88.7%), 미운영 지자체 26개(11.3%)
- (개선) 도로교통법 상 인도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 지자체 인도 포함 6대 지점으로 확대

* '보행자 안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 83,167건('19년) → 113,459건('20년) → 177,681건('21년)

현 행	
① 5대 지점 : 지자체 행정예고	
소화전 등 4대 지점	법령 범위 내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법령 범위 내 행정예고
② 장애인 전용구역 : 행정예고	
③ 기타 불법주정차 : 행정예고	



변 경	
① 6대 지점 : 지자체 행정예고	
소화전 등 4대 지점	법령 범위 내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법령 범위 내 행정예고
인도	법령 범위 내 행정예고
② 장애인 전용구역 : 행정예고	
③ 기타 불법주정차 : 행정예고	

- (운영방안) 인도(보도)구역 신고 요건은 1분으로 일원화*하고, 인도의 구분이 불명확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 및 과태료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

* (의견수렴 결과) 운영기준 일원화 찬성 지자체(172개) 중 1분 찬성 지자체 153개(89%)
 권익위에서도 인도(보도) 구역 신고요건 1분으로 제도개선 권고('23.6월 예정)

** 인도와 사유지 혼합된 장소, 차도와 인도 구분 불분명한 지점 등

< 인도구역 운영 기준 >

- ✓ (신고 요건) 1분 간격으로 일원화
- ✓ (운영 시간) 지자체 자율 운영*
 - * 지자체별 운영시간 의견 상이 / 24시(52.9%), 08~22시(24.4%), 06~24시(7.6%), 07~23시(6.4%)
- ✓ (과태료 면제) 권익위에서 권고('15.12월)한 사항을 지역 여건, 상황에 맞게 과태료 면제 기준에 활용
 - * 별도 상하차 공간이 없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일시 정차 가능 시간, 최대 정차 시간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